

제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

1. 일 시 : 2008. 01. 07(월), 14:00~15:30

2. 장 소 : 율곡관 2층 제2회의실(203호)

3. 평의원 출·결사항

▶ 참석 평의원

이일영 의장, 이원희 부의장, 유승화 평의원, 이순일 평의원, 유승익 평의원
오상탁 평의원, 이화숙 평의원, 강태현 평의원, 김관영 평의원, 박윤규 평의원
(이상 10명)

▶ 불참 평의원

김재형 평의원 (이상 1명)

4. 개회선언

의 장 : 재적평의원 11명 중 김재형 평의원을 제외한 열 명의 평의원이 참석하
셨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
다. 우선 회순에 따라 이중한 간사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.

5. 보고사항

<보고자 : 간사 이중한>

가. 학교법인 대우학원으로부터 「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요청」 공문 접수

1) 접수번호 : 학법대우 제07-398호(2008.1.4)

2) 접수일 : 2008년 1월 4일

3) 내 용

- 정관시행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, 구성
완료 후 학교법인 대우학원으로 통보 요청
- 2008년 1월 중으로 개방이사 및 감사의 선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
요청

나.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법인 답변(법인 질의에 대한 담당자
구두 답변 내용)

< 간서명 란 >

의 장



부의장



1)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

-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 중

: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, 대학평의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.

-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

: 2 이상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대학평의회가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- 학교법인 대우학원 정관 제18조 제1항

: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대학교 평의회에 두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5인으로 구성한다.

1. 대학교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전문대학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
3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
2)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배분에 관한 답변내용
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배분은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여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,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의 총 5인으로 규정하였으며,

- 아주대학교가 아주자동차대학에 비해 규모와 인적구성 등에서 현저히 월등하다 하여도 아주자동차대학과 공동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함.

- 이에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총 3인 중 아주대학교에서 2인, 아주자동차대학에서 1인을 추천하도록 위원 수를 배분한 것임.

(이중한 간사가 아주대학교대학평의회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.)

의 장 :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?

평의원 이순일 :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2 이상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 대학평의회에서 협의하여 추천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정관에서 이미 추천 인원을 규정해 놓은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정관을 개정할 수도 있습니까?

간사 이중한 :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정관 개정을 요청하신다면 학교법인 대우학원에 건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.

< 간서명 란 >

의 장



부의장



의 장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인원수는 대학평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요?

간사 이중한 :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관에서 먼저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정관에서 이미 추천위원의 수를 배분해 놓고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.

의 장 : 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우선 협의를 한 사항이 없는데 인원수까지 미리 정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아주자동차대학과 협의할 수 있는 모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박윤규 : 타 대학에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인원수를 대개 몇 명으로 했습니까?

간사 이중한 : 자세히 조사해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의 장 : 아주자동차대학과 협의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그 인원의 2분의 1을 평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간사 이중한 : 이 부분에 대하여 인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, 회의록에 반영하여 정식으로 건의를 해야 할지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.

평의원 박윤규 :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일단 법의 정신을 봤을 때 아주자동차대학과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의장님들만 만나서 협의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

의 장 : 그렇다면 의장과 부의장만 만나서 협의를 할까요? 하지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하지만 개방이사 및 감사 총 4분이나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

의 장 : 네,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이내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 회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
간사 이중한 :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1월말까지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승인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박윤규 : 인원수가 많으나, 적으냐의 차이이지 비례대표제로 비율을 봤을

< 간서명 란 >

의 장



부의장



때에는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네, 하지만 추천위원회 위원이 총 5인인 상태로 개방이사 및 감사 8분을 추천하면 재단에서 원하는 사람으로만 다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.

평의원 유승화 : 제가 보기에는 이를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의 2가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.

의 장 : 이를 받아들인다면 학교법인 대우학원에서 원하는 사람이 다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.

평의원 강태현 : 아주대학교에 3명을 배정해 달라고 건의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진행을 하거나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화 : 제 생각에는 이것을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대학평의위원회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이순일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10일 이내에 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

간사 이중환 : 그 부분에 대한 규정 사항은 없습니다.

부의장 : 정관 제17조 제2항에 30일 이내에 개방이사 및 감사의 2배수를 추천하지 않으면 관할청인 교육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평의원 박윤규 : 옳거나 그르거나 간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개방이사를 선임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간사 이중환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된 이사의 교육부 승인이 어렵고 이사회를 개최하기도 어려울 듯합니다. 또 관할청에서 선임을 한다 해도 한동안 표류할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제가 동의하는 것은 평의원회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접촉해서 저희의 입장을 표명하고, 개방이사 및 감사를 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는 등의 약속을 받아 빨리 진행하는 것입니다.

평의원 김관영 :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현재 무리가 있고, 아주자동차대학에서 입장을 어떻게 갖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의장님께서 아주자동차대학에 요청하셔서 이번 사안에 대해 한시적으로 아주대학교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표류가 되지 않고 시한 내에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강태현 :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사회 및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대화를 해

< 간서명란 >

의 장



부의장



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부의장 : 김관영 평의원의 말씀대로 아주자동차대학과 대화가 미리 이루어져야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주자동차대학에 배정된 인원을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로 배정하고 아주자동차대학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미리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이 사안은 아주대학교의 문제이므로 아주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간사 이중한 : 그렇다면 우선 조건부로 아주대학교의 추천위원회 위원 2인을 선정하고 협의가 완료되면 학교법인 대우학원 및 아주자동차대학에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?

평의원 유승익 : 그렇다면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에서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협의할 인원을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부의장 : 말씀대로 이를 안전화 하여 누가 어떤 임무를 가지고 협의할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.

간사 이중한 : 오늘 이사장님께서 법학전문대학원 실사 리허설에 참석하십니다. 오늘 협의를 위한 모임을 가져보면 어떻겠습니까?

의 장 :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간사 이중한 : 제가 법인사무처에 가서 논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현지조사 리허설 관계로 더 이상 회의를 참석하기 어렵게 되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김주용 선생이 계속하여 배석해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.

6. 심의안건

의안 제1호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(안)

(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(안)은 학교법인 대우학원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.)

의안 제2호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아주대학교 위원 추천(안)

의 장 : 오늘 회의에 상정된 다른 안건은 어떤 것입니까?

평의원 이순일 :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안건이 있습니다.

< 간서명 란 >

의 장

 부의장 

부의장 : 학교법인 대우학원과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미리 추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

(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하여 논의 후 위원 1인은 이순일 평의원, 나머지 위원 1인은 의과대학 이재호 교수 또는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되, 이에 관한 사항은 의장, 이순일 평의원, 강태헌 평의원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다.)

간사 이중환 : (협의 후 다시 회의에 참석함) 법인사무처에서 논의한 결과 검토 후 협의일정을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.(법학전문대학원 실사준비 관계로 이석함.)

의 장 : 네, 알겠습니다.

7. 기타 논의사항

간사 이중환 : 제가 더 이상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기타 논의사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6페이지를 보시면 2008학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차기 평의원회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학평의원회가 신설되어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간에 업무프로세스를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내용이 하단에 있습니다. 이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의 장 : 그러면 6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결정하겠습니다. 차기 회의는 언제가 가능하겠습니까? 1월 23일(수) ~ 1월 25일(금), 1월 28일(월) ~ 1월 30일(수) 중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평의원 강태헌 : 저는 1월 30일 오전, 오후 다 좋습니다.

의 장 : 그렇다면 30일 오후 2시로 결정하겠습니다.

(참석 평의원 만장일치에 의하여 차기 회의를 1월 30일 오후 2시로 결정하다.)

의 장 : 다음으로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 회의 중 어느 회의를 먼저 개최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
평의원 김관영 : 심의사항인 경우에는 교무회의 이후에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, 자문사항인 경우에는 교무회의 이전에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.

평의원 유승익 : 네, 동의합니다.

의 장 : 그러면 자문에 관한 사항은 교무회의 이전, 심의에 관한 사항은 교무회의 이후에 대학평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4차 회의는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한대로 2월 14일(목) 오후 4시로 결정하면 어떻

< 간서명 란 >

의 장

 부의장

했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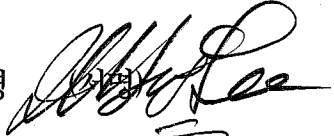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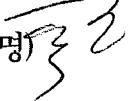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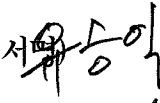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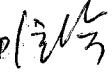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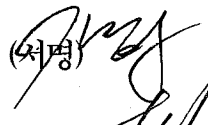

부의장 : 네, 동의합니다.

(참석 평의원 만장일치에 의하여 제4차 회의를 2월 14일 오후 4시로 결정하다.)

8. 폐회선언

의 장 : 이상과 같이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제2차 아주대학교대학 평의원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.

2008년 1월 7일

의 장	이 일 영	(서명) 
부의장	이 원 희	(서명) 
평의원	유 승 화	(서명)
평의원	이 순 일	(서명) 
평의원	유 승 익	(서명) 
평의원	오 상 탁	(서명) 
평의원	이 화 숙	(서명) 
평의원	김 재 형	(불참)
평의원	강 태 헌	(서명)
평의원	김 관 영	(서명) 
평의원	박 윤 규	(서명) 
간 사	이 중 한	(서명) 